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750-8701-8/ 전송 750-8710
 처리부서 : 소비자보호과(중구 서소문별관 3층), 담당 : 이 양 래

문서번호 소비41250-890

시행일자 1996. 8. 29.

경유

수신 (제 1 안)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i>Handwritten signature</i>
국 장	전 결	1
과 장	<i>M</i>	법무담당관실사필
계 장	<i>Handwritten</i>	결재 1996. 8. 29
기안	이 양 래	지역경제국장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조례안 입법예고

66P

1.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조례 제정계획('96. 8. 28. 지방침 제1097호)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합니다.

- 가. 입법예고안 : 따로붙임
- 나. 입법예고안 심사 : 법무담당관실
- 다. 예고방법 : 시보게재(공보담당관에 게재의뢰)
- 라. 예고기간 : 20일 이상

따로붙임 : 입법예고안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제 2 안)

수신 공보담당관

제목 시보게재의뢰

1.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조례 제정계획('96. 8. 28. 지방침 제1097호)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Handwritten mark

199

듣고자 서울특별시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코자하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조례안 입법예고 공고(안) 1부. 끝.

소 비 자 보 호 과 장

(제 3 안)

수신 시민과장

제목 컴퓨터 게시판 개재 의뢰

1.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조례 제정계획('96.8.28 시방침1097호)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코자하니 컴퓨터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조례안 입법예고 공고(안) 1부
2. 자료저장 디스켓 1부. 끝.

소 비 자 보 호 과 장

공 고 (안)

발달자	1996. 8. 27	338 호
발달자	1996. 8. 27	338 호
발달자	1996. 8. 27	338 호

서울특별시공고 제 996-338 호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년 월 일

서울특별시시장

1. 제정취지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소비자의 권리확보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서울특별시와 사업자의 의무를 정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 및 시의 의무,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함.
- 나.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시민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가격, 수급상황, 유통실태 등을 조사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다.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계량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의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라.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물품 또는 용역과 계량 및 규격에 관한 조사, 소비자보호교육 등을 소비자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179

- 마. 시장은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함.
- 바.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문제의 영업활동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함.
- 사.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참조: 소비자보호과장, 전화번호: 750-8701~2, FAX: 750-8710, 주소: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2

180